

공동시설세(공동시설) 부과지역 변경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소 방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윤 영 창

공동시설세(소방시설) 부과지역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본 공동시설세(소방시설) 부과지역 변경안은 2008년 9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9월 1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공동시설세의 부과지역이 지난 2000.11.10.(충청북도 고시 제2000-168호) 고시되었으나 그동안 소방관서의 신설, 지역개발 등으로 소방수혜지역이 확대됨에 따라
- 지방세에 대한 부담분임과 응익과세의 원칙을 준수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「충청북도 도세 조례」 제54조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부과지역을 변경고시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추가 부과지역 현황

구 분	행정구역	현행부과 지역		금회추가 지역		변경후부과지역		제 외 지역
			%		%		%	
행정통리	4,519	4,345	96.1	122	2.7	4,467	98.8	52
반	17,985	17,690	98.4	224	1.2	17,914	99.6	71

4. 검토의견

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(응의과세)하는 목적세로서 부과지역은 충청북도 도세조례 제5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부과지역은 지난 2000년 11월 10일(충청북도 고시 제2000-168호) 고시되었음.

2000년 고시이후 인구증감에 따른 통·리의 신설과 분할 및 통·폐합 등으로 인한 행정구역이나 명칭변경에 따른 조정과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신설과 소방력 보강, 도로 개설 및 확·포장 등으로 소방수혜 가능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
이번에 9개시군 122개통·리 224개반을 추가지정하게 되면 도내 4,519개 통·리 중 98.8%인 4,467개 통·리와 17,985개반 중 99.6%인 17,914개반이 적용을 받게됨.

이번에 제출된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변경안은 2000년 고시이후 지역 개발과 소방시설 및 소방력 보강 등으로 볼때 응익과세라는 공동시설세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으며, 행정예고를 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변경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됨.

붙임 :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변경안